9-5-1-2. 제도운영상황(징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징계제도

정규직(일반정규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ㅇ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단,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가능
	의결정족수	ㅇ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봄
조합간부 징계시 절차		ㅇ 일반직원과 동일 - 단,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정규직(무기계약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ㅇ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단,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가능
	의결정족수	ㅇ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봄
조합간부 징계시 절차		ㅇ 일반직원과 동일 - 단,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비정규직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ㅇ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단,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가능
	의결정족수	ㅇ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봄
조합간부 징계시 절차		ㅇ 일반직원과 동일 - 단,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준일	2020년 09월 14일	제출일	2020년 09월 14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문성준	경영관리실 인재개발팀	042-865-8881
감독자	김인신	경영관리실	042-865-8870
확인자	손병태	감사실	042-865-8920